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경두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무원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현재 국방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2급이상 군무원 임용권을 임용권자(대통령)에게 환원하는 한편,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을 현재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 결과만으로 최종 결정하던 것을 공무원 처럼 필기시험점수와 면접시험점수를 함께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2급이상 군무원 임용권 조정(안 제9조의3, 제9조의4, 제135조)

그동안 묵시적·관습적으로 국방부장관이 행사해온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을 임용권자(대통령)에게 환원하여 군무원의 위상 강화

나. 5급이상 군무원의 보충 및 승진규정 개정(안 제9조, 제41조)

2급이상 군무원 임용권 조정에 따라 5급이상 군무원의 보충 및 승진 규정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직군內 보충 및 승진 대상을 3급에서 4급으로, 직렬內 보충 및 승진을 4급에서 5급으로 확대

다. 공·경채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변경(안 제18조)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을 현재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결과만으로 최종 결정하던 것을 필기시험점수와 면접시험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

라. 군무원 대우 기준 개선(안 별표3)

별표3의 일부내용이 군인과 군무원의 계급서열로 오인되어 신분간 위화감 및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별표3 일부삭제)

마. 경력 채용 요건 개선(안 별표4)

경력 채용 요건인 별표4에 군인 경력 요건을 추가

바. 군무원 당직근무 조항 개선(안 제50조)

현재의 군무원 당직근무 조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당직근무 조항을 준용하도록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3급”을 “4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2급이상 군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면직을 제외한 임용권은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제9조의4 (2급이상 군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① 2급이상 군무원의 채용 및 승진은 법 제7조(신규채용), 제15조(승진)에 따라 국방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임용권자에게 임용제청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합산 한 성적 순으로 결정하며, 면접시험 합격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이 높

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3급”을 “4급”으로, “4급”을 “5급”으로 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일반군무원의 당직근무는 해당 일반군무원이”를 “일반군무원은 당직근무에 편성되며 세부편성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이 정한다.

제1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2급이상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3조의2제1호를 준용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전문임기제군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은 제외한다)	전문군무경력관	전문임기제군무원	한시임기제군무원
1급	가군 (32호봉 이상)	가급	
2급			
3급			
4급	가군 (21호봉이상 31 호봉이하)		
5급	가군 (20호봉이하)	나급	5호
6급	나군 (24호봉이상)	다급	6호
7급	나군 (23호봉이하)	라급	7호
8급	다군 (25호봉이상)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초과)	8호
9급	다군 (24호봉 이하)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	9호

별표 4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임용예정계급 경력·소지분야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군인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① ~ ④ (생략)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결원에 따른 보충 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⑤ ----- ----- -----.
1.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직군별, 계급별, 각 군별 및 국방부 직할부대별	1. 4급 ----- ----- ----- --
2.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직렬별, 계급별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별	2. 5급 ----- ----- ----- --
<신설>	제9조의3 (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2급이상 군무원에 대한 신규채

<신설>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생략)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으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 ⑤ (생략)
제41조(승진임용) ① 3급 이상 일

용 및 승진임용, 면직을 제외한 임용권은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제9조의4 (2급이상 군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① 2급이상 군무원의 채용 및 승진은 법 제7조(신규채용), 제15조(승진)에 따라 국방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임용권자에게 임용제청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합산 한 성적 순으로 결정하며, 면접시험 합격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승진임용) ① 4급 -----

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군무원 중에서 임용하고, 4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같은 직렬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군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 ----- ----- --- 5급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당직근무) <u>일반군무원의 당직근무는 해당 일반군무원이 소속한 부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제50조(당직근무) ① <u>일반군무원은 당직근무에 편성되며 세부편성은 -----.</u>
<u><신 설></u>	② <u>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③ <u>각군 참모총장 및 국적부대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④ <u>그 밖에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 및 국적부대장이 정한다.</u>
제135조(채용 자격) ①·② (생략)	제135조(채용 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u>2급이상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3조의2제1호를 준용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291